● 제289회● 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

#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19. 09. 04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

# 【 봉양순 의원 (대표)발의 】

의안번호 865

# I. 조례안 개요

#### 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가. 제 안 자 : 봉양순 의원(찬성의원 13명)

나. 제 안 일 : 2019. 8. 07.

다. 회 부 일 : 2019. 8. 13.

#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 가. 제안이유

○ 사회복지기금은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, 조례에서 이를 "출연금"으로 명시하고 있어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 영기준」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변경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○ 조례 제5조·제6조·제8조·제9조의 1호1항 "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"을

- "시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전출금"으로 변경
  - 출 연 금: 지자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
  - 기금전출금: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에 전출하는 경비

##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 법령: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, 「지방자치단체 예신편성 운영기준」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

# Ⅱ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# 1 개정안의 취지

 개정안은 사회복지기금의 경우, 일반회계의 전출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, 조례 상 "출연금"으로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변경하 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음.

# 2 주요사항 검토

□ 예산과목 변경(안 제5조·제6조·제8조·제9조의 제1항제1호)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노인복지계정) ① 노인복지계정의	제5조(노인복지계정) ①
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	
1.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	1 기금전출금
제6조(장애인복지계정) ① 장애인복지	제6조(장애인복지계정) ①
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	
조성한다.	
1.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	1기금전출금
제8조(자활계정) ① 자활계정의 자금	제8조(자활계정) ①
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	
1.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	1 기금전출금

제9조(주거지원계정) ① 주거지원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제9조(주거지원계정)	①

1.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

1. ----- 기금전출금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9조의2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따르면, 기금의 설립목적은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금운용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- 예산의 지출계획은 자치단체의 사업별 예산구조에 따라 "조직 -부문-정책사업-단위사업-세부사업-목" 체계로 작성하나, 기 금은 그 특성상 직접사업보다는 재무활동이 대부분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구조화하고 있음.
- 아사회복지기금의 경우 일반회계 전출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, 현행조례는 "출연금"으로 명시하고 있음.
- 행정안전부의「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서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과목을 정하고 있는 바, 기금의 수입과목은 전입금을 포함한 9개 과목1)으로 출연금은 기금의수입과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.
- 따라서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서 정하는 기
  준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됨.

#### 기금운용계획 확정 절차「지방기금법」제8조

○ 기금운용관\*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안을 작성,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

<sup>1)</sup> 기금의 수입과목: ①전입금, ②보조금, ③차입금, ④융자금회수(이자수입포함), ⑤예탁금원금회수, ⑥예치금회수, ⑦예수금, ⑧이자수입, ⑨기타수입

<sup>※</sup> 행정안전부, 「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, p.299

- \* 시·도 기금별 담당 실(국)장, 시·군·구 기금별 담당 실(과)장
- 시·도는 회계연도 개시 50일전, 시·군·구의 경우는 40일전까지 세 입·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

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통보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사전협의 · 심의  $\Rightarrow$  $\Rightarrow$  $\Rightarrow$ (기금총괄관리관) (기금운용관) (기금총괄관리관)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집행부안 확정 기금운용계획 확정  $\Rightarrow$  $\Rightarrow$ 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(기금총괄관리관→단체장) (지방의회 의결)

#### 3 종합 의견

- 사회복지기금은 기금전출금으로 구성되는 바, ①출연금, ②차 입금, ③융자금, ④기타 수입금으로 분류됨.
- 현행 조례는 기금전출금의 일부인 '출입금'을 사회복지기금 재원으로 명시하는 바, 용어의 명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.
- 현행 조례에서 전출금이 아닌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규정은 기금 예산과목 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으로 조례 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바,
- 개정안의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서 정하는기준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됨.